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310 | 2025.12.08 (2025.12.01~2025.12.07)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기획재정부>는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통상환경에 대응하여 핵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6년 정기 할당관세 운용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방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국방·산업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AI)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입법(행정)예고】

<기획재정부>는 대주주등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범위를 거주자가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는 벤처·혁신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공모 집합투자기구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금융투자업 제도개선 사항을 규정하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국가전략기술, 국가핵심기술, 방위산업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등 중요 기술을 보유하여 국가적으로 그 경영권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큰 기업들에 한해서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복수의결권주식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1인)**」,

재화나 용역의 표시·광고가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이미지나 설명임을 명확히 알리고, 허위·과장되거나 오인 가능성이 있는 활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6인)**」,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주도한 사업자이거나 또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도모한 사업자 중 시장 지위가 가장 높은 사업자의 자진신고 감면혜택을 배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과세특례 대상에 「상법」의 복수의결권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0인)**」,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제작된 게임물에 대해 AI 생성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그 표시를 위조·변조·훼손 또는 제거하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

벤처투자회사가 조합별로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설립요건과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하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4인)**」 ,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정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건강 또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0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생애주기별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학교와 사회 전반에서 노동인권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

현행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 체불 기준을 1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경우로 확대하고, 명단 공개된 사업주가 한 번이라도 임금체불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명단 공개 기간 중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0인)**」 ,

주택에 설치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의 연동성 및 호환성 확보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인증 및 적합성 평가 제도를 신설하고, 사업주체가 인증 또는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사용검사 시 인증 또는 적합성 평가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

주요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를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운영 과정에서 적극적인 행정 수행이 위촉되지 않도록 면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0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법사위>, <교육위>, <행안위>, <국토위> 등에서 법안 심사가 진행되며, <과방위>에서는 AI 제정법 관련 입법공청회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26년 정기 할당관세 운용방안」 확정(기획재정부) 6
- 「국방·산업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AI)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과학기술정보통신부) 7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산업통상부) 9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산업통상부) 9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중소벤처기업부) 9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중소벤처기업부) 10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 10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국토교통부) 10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국토교통부) 10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 11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 11
-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문화체육관광부) 11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후에너지환경부) 11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 12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근혜의원 등 10인) 13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1인) 13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1인) 13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6인) 1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1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의원 등 12인) 15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0인) 15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1인) 1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0인) 1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17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4인)	17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0인)	18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0인)	18
• 건축물 등의 위생관리에 관한 법률안(이수진의의원 등 13인)	19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	19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의원 등 11인)	2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0인)	21
•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21
•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3인)	22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의원 등 10인)	22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23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23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의원·복기왕의원 등 24인)	2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0인)	25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4인)	25
• 건설안전특별법안(윤종오의원 등 14인)	25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26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0인)	27
•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0인)	27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09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바로가기](#)

- [바이오/헬스케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약가제도 개선방안(안) 보고
- [국방획득/방위산업] 국방·방산분야 소위원회[국가계약분쟁조정위 산하] 신설에 따라 방위사업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적절한 대응방안 선택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 [지적재산권] ‘생성형 AI의 학습 데이터 사용 및 출력물에 관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최근 독일 판결 (GEMA v. OpenAI)
- [방송통신(TMT)] EU 집행위원회, ‘디지털 간소화 방안’ 발표
- [노동] 월간 노동 뉴스레터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26년 정기 할당관세 운용방안」 확정 - 에너지·먹거리 분야 지원을 통해 서민 물가 안정 도모 - 통상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자동차 분야 지원 확대 -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 위한 재자원화 분야 신규 도입	2025-12-02
---------	---	------------

정부는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통상환경에 대응하여 핵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6년 정기 할당관세 운용방안」을 확정하였음

※ 할당관세 :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세율을 인하하는 제도

정부는 환율 상승 등으로 서민 경제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주택 난방용 등으로 사용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율(기본 3%)을 내년 상반기까지 금년과 동일한 수준(0% 또는 2%)으로 인하할 계획임. 한편 국제 유가가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 등을 감안하여 내년 하반기부터는 세율 인하폭을 1%p 줄여서 지원하기로 했음

아울러 산업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경우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라 현재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 지원을 위해 금년과 동일하게 연중 무세화(3%→0%) 하기로 했음

또한 최근 먹거리 물가가 불안한 점을 감안하여 옥수수(가공용), 커피(생두), 설탕, 감자전분 등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유지할 계획임. 설탕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인하된 세율(30%→5%)을 계속 적용하되, 다만 할당 적용물량의 경우 현행 연간 10만톤에서 12만톤으로 20% 확대하여 국내 경쟁 촉진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로 하였음. 또한 현재 긴급 할당관세로 지원하고 있는 해바라기씨유, 냉동딸기, 코코아가루 등 12개 먹거리 관련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하였음

이와 함께 정부는 美 품목관세 부과 대상으로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철강 분야 지원을 위해 니켈 괴 등 2개 부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고 현재 긴급 할당관세 적용 중인 페로니켈 등 3개 부원료의 적용기한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음

자동차 산업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구자석 등 5개 품목에 더하여 알루미늄 합금(전기차 배터리용) 1개 품목을 내년 지원대상에 추가하고, 아울러 반도체, 이차전지 산업에 사용되는 Grinding Wheel 등 2개 품목과 탄산리튬 등 3개 품목도 각각 추가 지원될 예정임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해 폐촉매, 폐인쇄회로기판, 폐배터리 등 재자원화 원료 5개에 대해 할당관세가 신규로 적용됨. 또한 농축어업, 섬유 등 취약 산업 지원을 위해 사료·비료·농약·섬유 원재료 등에 대해서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음

정부는 상기 할당관세와 함께 내년에 적용될 조정관세, 특별긴급관세 등 탄력관세 운용방안을 확정하였음. 먼저 국내시장 교란 방지, 산업기반 보호 등을 위해 관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조정관세의 경우 금년과 마찬가지로 고추장, 활동, 냉동 명태 등 13개 품목에 적용될 예정임

저가의 쌀과 쌀 가공품, 인삼 등의 국내 수입이 급증하게 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금년과 동일하게 미곡류 16개 및 인삼류 24개 품목이 적용 대상임

국내 소비량 대비 국내 생산이 부족한 농림축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운용하는 시장접근물량(Tariff Rate Quota) 증량의 경우 참깨, 팔·녹두, 맥아 등 14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용할 예정이며, 대두 1개 품목은 국내 콩 재고·생산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하여 증량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정부는 이러한 탄력관세 내용을 담은 2건의 대통령령 개정안과 2건의 기획재정부령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26.1.1.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산업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AI)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AI 기반 국방혁신 및 방위산업 경쟁력 제고 위해 범정부 협력 본격화 -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의 국방·산업 AI 전반의 AI 혁신 가속화 - 제조AI, M.AI와 연계하여 국방 AI 생태계 구축 적극 지원 - AI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국방 분야 진입, 성장 및 상생협력 기반 강화	2025-12-03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방 AI 생태계 발전포럼'을 계기로 **「국방·산업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AI)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힘

최근 글로벌 안보환경 변화와 함께 AI 기반 지능형 지휘통제, 무인·자율체계, 국방운영 자동화 등 국방 분야 전반의 인공지능 적용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제조·산업 인공지능 전환(AI)의 핵심 부처인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의 전문성과 역량을 융합하고 연계성 있는 정책으로 국방·산업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AI)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업무협약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음

주요 업무 협력 내용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의 국방·산업 등 전반의 AI 혁신, 국방 AI기술 수요 발굴, 실증 기회 제공, 국방 R&D인프라 활용 지원, AI 핵심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국방·산업·공공 분야 활용, AI 인재양성, 방산·제조분야 AI기술 국방 분야 적용 확대, 국방 AI 분야 혁신 스타트업·중소기업 발굴 및 육성임

이번 협약으로 네 부처는 인공지능 전환(AI) 핵심 기술 확보부터 국방분야 실증, 산업 적용, 창업 초기 기업(스타트업)·중소기업 확산까지 이어지는 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음. 이를 통해 국방·산업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AI)을 가속화하여 방위산업 경쟁력을 지속 확보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이라는 목표에 한층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또한, 최근 스마트팩토리, 에너지 수요 예측, 스마트 그리드 등 전 산업이 빠르게 AI 기반 구조로 전환되는 가운데, 산업 전반의 AI는 기업 경쟁력 및 생산성을 높이고, 국가 전반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시행일자
산업통상부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2026-06-03 시행 예정

혁신적인 과제를 신속·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프로세스를 개편하고, 규제개선 성과 제고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정비의무를 강화하며, 사업 개시·확대 과정에서 직면하는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시장·소비자 보호를 위한 특례과제의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정부의 규제개혁 기초를 보다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기업의 혁신·투자 동력을 제고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산업통상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2026-06-03 시행
-------	--------------------	---------------

엔지니어링산업 역량 강화를 통한 국가경제의 혁신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사물인터넷·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을 융합한 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보급 및 활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하여 그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처리기간 내에 관련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며,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내역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7-01-01 시행 예정
---------	----------------------------------	------------------

현행법상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물품뿐만 아니라 대기업 또는 해외기업이 생산하고 중소기업은 유통만 하는 제품을 구매한 경우 등이 포함되어 있어,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의 취지가 달성되지 아니한다는 지적이 있는바, **중소기업제품의 정의를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6-06-03 시행 예정

금융회사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반성장지수 내 상생금융지수를 신설하고,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에너지 요금까지 확대하며,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의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고, 연동 요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며, 거래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탁·위탁거래 조사에 대하여 3년의 제척기간을 도입하고,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수를 확대하면서 건설업 분야 위원을 추가하며, 기술자료 유용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2026-03-03 시행 예정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 유사 규모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활용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징금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서 부족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뿐만 아니라 전력시장을 통해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안정적인 전력사업 진출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2025-12-02 시행

사업구역의 상당부분이 공유수면매립지로 구성된 기업도시의 경우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 등 소유권 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양도·양수 가액 산정기준 등에 대한 특례 조항이 실효되어 토지매입비용 증가 등 개발 수익성 저하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공유매립지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양수 가액 산정기준 등에 대한 특례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기업도시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도시개발 사업의 신규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입지 여건을 개선해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지역의 기업도시 조성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2026-06-03 시행 예정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고속철도 차량의 절반 이상은 20년 이상 된 노후 철도차량으로 그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철도이용자의 안전 확보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철도운영자가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철도차량의 교체를 적기에 시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 철도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국가가 교체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12.01. ~2025.12.15.

대주주등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범위를 거주자가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전화: 044-215-4233, 팩스: 044-215-8073\)](tel:044-215-4233)

기획재정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12.01. ~2025.12.15.
-------	-------------------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확정됨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였던 증권거래세 탄력세율을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영(零)에서 1만분의 5로, 코스닥시장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1만분의 15에서 1만분의 20으로 환원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전화: 044-215-4233, 팩스: 044-215-8073\)](tel:044-215-4233)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12.03. ~2026.01.12.
---------	----------------------	-----------------------------

콘텐츠 분쟁 조정사건 증가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한 「콘텐츠산업진흥법」 일부 개정('25.1.31. 공포, '26.2.1. 시행)에 따라 위임사항 규정 및 연계 조문 정비를 위해 하위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전화: 044-203-2586, 팩스: 044-203-3464\)](tel:044-203-2586)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12.03. ~2026.01.12.
----------	--------------------------------------	-----------------------------

공기열에너지는 대기 중의 미활용열을 활용하여 냉·난방 생산 등에 사용하는 친환경 에너지로, 히트펌프를 통해 외부 공기열을 흡수 및 활용함으로써 국내 탄소배출량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임. 이미 주요 선진국은 히트펌프를 통한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공기열 히트펌프의 보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국내법은 수열 및 지열만 재생에너지로 인정 중임

이에, 일정 기준 이상의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의에 포함하여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확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함 (안 제2조제4항 및 별표 1 개정)

※ 문의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tel:044-203-5143) (전화: 044-203-5143, 팩스: 044-203-4579)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2025.12.01.
~2026.01.12.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생업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실외체육시설 및 야영장 설치 시 자격 요건, 배분 물량, 부대시설 면적 상한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 공익사업에 근린생활시설 편입 시 11개 용도에 한정하여 허용했던 이축 대상을 적법하게 용도변경한 시설 전체로 조정하며, 주택에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시 허가요건을 지목과 주택의 적법성 여부로 한정하여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법률 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하여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동식물시설 및 기존 근린생활시설의 의미, 허가 대상 시설의 승계 및 부대시설 설치면적 비율과 관련한 조례규정의 근거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tel:044-201-3746) (전화: 044-201-3746, 팩스: 044-201-5574)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12.04
~2026.01.13.

벤처·혁신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공모 집합투자기구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25.9.16. 공포)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금융투자업 제도개선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tel:02-2100-2664) (전화: 02-2100-2664, 팩스: 02-2100-2679)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0인)	2025-12-04 발의
---------	----------------------------------	---------------

현행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그런데 계약갱신요구권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없어 임차인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함. 반면 계약갱신요구권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재건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차인 보호규정이 임대인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합리적 이유로 인한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작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건물의 안전성이나 합리적 사유로 인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며, 각 계약해지사유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를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리금의 공정한 평가기준을 고시할 의무를 부여하며, 호텔이나 공항에 입점하는 경우 등 권리금이 임차인의 노력으로 형성된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1인)	2025-12-04 발의
---------	-------------------------	---------------

최근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규정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내기업들이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노출될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음

미국·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경영권 안정화 수단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적대적 인수·합병 등 경영권 공격에 상응하는 방어 수단이 부재한 상황임. 따라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 특수한 경우에 한정해서라도 현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만 규정하고 있는 복수의결권주식제도를 시급히 확대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 국가핵심기술, 방위산업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등 중요 기술을 보유하여 국가적으로 그 경영권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큰 기업들에 한해서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복수의결권주식제도를 도입해 기업들의 경영권 보호를 강화하고, 중요 기술들의 해외 유출을 막고자 함 (안 제351조의2부터 제351조의6까지 및 제369조제1항)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1인)	2025-12-01 발의
-------	-------------------------------	---------------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그런데 유럽연합과 영국은 매출액의 100분의 4를 과징금의 상한으로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등 법 위반 시 현재의 과징금 수준이 억제력이 약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과징금의 상한을 30억원으로 조정하고, 매출액의 100분의 4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하고자 함 (안 제64조의2제1항)**

정무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6인)

2025-12-02 발의

최근 인공지능 기술,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상품 이미지·설명, 소비자 후기 등이 실제와 다른 방식으로 생성·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미지·설명·후기에 대한 표시의무나 규율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임시중지명령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요건이 엄격하고 요청 주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외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재화나 용역의 표시·광고가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이미지나 설명임을 명확히 알리고, 허위·과장되거나 오인 가능성이 있는 활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또한 임시중지의 요건을 보다 넓게 규정하고 요청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여 임시중지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안 제13조제2항제11호, 제21조제1항제8호 신설, 안 제32조의2 등)**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2025-12-03 발의

현행법은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의결에 협조한 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나 과징금 또는 고발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주도하거나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가 경쟁 사업자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행위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사업자들은 자진신고를 통해 자신들은 감면을 받는 반면,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은 경쟁사들은 과징금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중한 제재를 받아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유도하는 이른바 ‘털어내기’식 자진신고로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통해 가장 큰 이익을 얻거나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여 법 집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에도 크게 위배되는 만큼 보완이 필요함

이에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주도한 사업자이거나 또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도모한 사업자 중 시장 지위가 가장 높은 사업자의 자진신고 감면혜택을 배제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를 주도하고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에 대해 책임을 강화하고, 이들의 자진신고를 통해 시장 지위가 낮은 경쟁사들이 부당하게 퇴출당하는 것을 방지하여 건전한 시장 경쟁 구도를 유지하려는 것임 (안 제44조제1항 단서 신설)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2025-12-05 발의

구(舊)「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준수를 위하여 이동통신사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관여하에 시장상황반을 운영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담합으로 보아 제재하여 논란이 된 바 있음

이처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경쟁제한 또는 담합과 관련한 규정들이 타 법률 및 타 부처의 행정조치와 충돌하는 경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법 집행의 정합성과 일관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특히 법령 해석과 판단에 있어 부처 간 의견이 엇갈릴 경우, 타 법률의 규범을 성실히 이행한 사업자에게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이러한 충돌을 사전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성격과 중대성,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재처분 하도록 하고자 함 (안 제9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정무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0인)

2025-12-05 발의

현행법은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두어 사업자가 위반행위를 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이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절차상으로는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소비자단체소송에 대한 허가 결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존 「소비자보호법」의 2006년 「소비자기본법」 전면개정 및 2008년 「소비자단체소송규칙」의 시행으로 소비자단체소송이 도입된 이래 2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소송 제기 건수가 10건에도 못 미치는 등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소비자단체소송의 범위를 소비자권익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까지로 확대하고 소송허가신청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주체 및 절차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소비자단체소송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기획재정위원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1인)

2025-12-04 발의

현행법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 입찰자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소·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명 ‘기업형 브로커’가 일반인을 조달 입찰에 참여시켜 낙찰을 받게 한 후 이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해당 입찰건을 넘겨 받아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물품조달 등을 수행하면서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는 부당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계약상대자가 아닌 자가 입찰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 및 계약상대자가 계약 의무를 직접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불공정 조달행위로 규정하여 조달청장이 이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요기관이 직접 체결한 계약에서 이와 같은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조달청장이 해당 수요기관에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브로커에 의한 불공정 조달행위를 방지하고 조달거래의 공정성을 확립하려는 것임 (안 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등)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0인)

2025-12-04 발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창업주의 안정적인 경영권 행사를 위하여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규정한 「상법」에도 불구하고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허용하고 있고,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을 위하여 보통주식을 납입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해당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시점까지 과세이연하도록 특례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미국·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경영권 안정화 수단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적대적 인수·합병 등 경영권 공격에 상응하는 방어 수단이 부재한 상황으로, 「상법」 개정을 통하여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에 한해서라도 복수의결권주식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과세특례 대상에 「상법」의 복수의결권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하여 중요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복수의결권주식제도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안 제47조)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2025-12-03 발의

최근 게임 제작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AI가 생성한 게임물과 사람이 창작한 게임물이 혼재하여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AI 활용 여부를 표기할 의무가 없어, 이용자들이 게임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저작권·지식재산권 분쟁, 창작자 권리 침해, 이용자 기만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음. 또한 일부 제작자들이 생성형 AI 표기를 고의로 삭제·변조하거나 위조하는 방식으로 게임물을 유통하는 등 불법·불투명 유통행위가 나타나고 있으나, 이를 직접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제작된 게임물에 대해 AI 생성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그 표시를 위조·변조·훼손 또는 제거하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게임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게임 유통질서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공정하고 안전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 (안 제32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4인)

2025-12-04 발의

현행법은 벤처투자회사가 벤처투자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직접 결성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이 되어 투자와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합 운용 기능이 벤처투자회사에 집중되는 구조임

그런데 해외 주요국은 조합마다 운용전문회사를 두는 방식이 일반적이어서 해외 투자자는 국내 조합의 운용 구조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출자 심사가 지연되는 경향이 있음. 또한 현행 구조는 조합 단위로 책임이 분리되지 않아 운용인력의 성과를 개별 조합의 실적과 연계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벤처투자회사가 조합별로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설립요건과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하여 조합 단위의 운용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를 통하여 해외 투자자의 검토 부담을 줄이고 해외 벤처자본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며, 조합별 책임운용의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0인)

2025-12-05 발의

현행법은 송·배전사업자에게 전기공급 및 계통접속 과정에서 “차별 없는 이용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어, 전기사업자 간 접속 경쟁은 기본적으로 선착순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과 같이 공공성이 높은 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민간 영리 목적의 일반 사업자와 구분 없이 계통 접속 대기열에서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특히 계통 용량이 제한된 지역에서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민간 사업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경쟁해야 하므로, 공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연되거나 추진이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현행 법 체계가 공동체형 분산전원의 정책적 필요성과 공공적 성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이에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공공적 성격을 가진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하여는 계통 접속 과정에서 선착순 원칙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한정된 계통 자원을 주민참여·공공성 기준에 따라 우선 접속·배분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내 에너지소득 환류, 지역경제 활성화, 분산전원 확대 등 국가의 정책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고자 함 (안 제20조 및 제45조)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0인)

2025-12-05 발의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왔으나, 지난 2019년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정보공개를 정보의 내용과 성격, 공개의 대상 및 목적 등에 대한 고려없이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짐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이 아닌 대국민 정보공개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1990년에 이미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제170호 화학물질협약 등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이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등 여타의 국내법의 관련 규정과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음. 또한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여나감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고자 노력해 온 그간의 입법 추세에도 어긋남

따라서 국민의 생명·신체·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등 공익을 위해 공개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러한 정보 공개를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적 요건 역시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정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건강 또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핵심기술 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조정하고, 해당되는 정보의 공개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의 적용 범위를 산업기술의 유출에 관한 소송으로 한정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지는 경우 역시 정보공개 청구,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 업무를 수행하면서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공무원으로 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보건복지위원회

건축물 등의 위생관리에 관한 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2025-12-02 발의

최근 건축기술의 발전으로 건축물이 대형화·복합화되고 초고층 건물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종 감염병의 출현 등으로 다중이용시설 위생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 정화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건물위생관리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특별한 자격요건 없이 단순 신고업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오늘날 요구되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관리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를 보이고 있음. 이로 인하여 건물위생관리업무의 전문성이 저해되고 업체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건물위생관리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또한, 최저가 낙찰 위주의 계약 관행과 잦은 업체 변경은 장기적인 투자와 고용 안정을 보장하지 못하여 건물위생관리업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처우 개선을 어렵게 하고 있음

이에 건물위생관리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건물위생관리원의 근로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건물위생관리 업무를 체계화·전문화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국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건물위생관리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종사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

2025-12-04 발의

의약품의 효과와 부작용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바, 환자에게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성별의 차이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효과 및 부작용을 알 필요가 있음

예컨대, 수면제로 사용되는 졸피뎀의 경우 같은 양으로 복용하더라도 여성은 남성보다 혈중 약물 농도가 약 40% 더 높게 유지된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음. 이후 미국FDA는 여성의 졸피뎀 권장 복용량을 남성의 절반으로 낮추었고, 의약품의 효과와 부작용을 평가할 때 반드시 성별의 차이를 반영하도록 임상시험 설계 단계부터 남녀 데이터를 구분하여 분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임상시험을 실시하려는 자에게 성차분석을 실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따르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여 환자의 성별을 고려한 의약품 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34조제7항 신설)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1인)

2025-12-02 발의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위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최후에 행사하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고 개별 근로자가 위험 여부를 단독으로 판단해야 하거나,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이유로 작업을 중지하는 경우 사업주가 징계 등을 할 우려가 있어 근로자가 작업중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또한, 현장의 위험을 파악하여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현장의 위험요인을 즉시 알기 어려워 적절한 예방조치 등 작업중지 조치 의무를 적시에 이행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현실화되기 전 단계에서 발견된 위험 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의 요건을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로 완화하여 근로자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근로자,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우려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즉시 사업주에게 알리고 작업중지 또는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주로 하여금 현장의 위험 정보를 신속히 알게 하여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선제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작업중지권 등의 행사 과정에서 근로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구제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부당한 불이익 처우에 대한 벌칙을 도입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51조, 제52 및 제169조)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0인)

2025-12-02 발의

현행법은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여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분류하고 있음

그런데 업무상 질병을 판단하는 기준은 노출 기간, 강도, 의학적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반복적·장기적 노출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음. 최근 한 반도체 기업 근로자의 방사선 피폭 사례처럼 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급성으로 발생한 경우에도 현행 제도에서는 ‘업무상 질병’으로 처리되는 문제가 발생한 바 있음. 단기간·급성 노출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 따라 사고성 재해임에도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이에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가능성이 인정되는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중대한 위험요인의 관리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안 제37조제1항)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2025-12-03 발의

모든 국민은 헌법과 국제노동규범에 따라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 노동기준에 관한 권리, 노동3권 등 기본적인 노동인권을 보장받아야 함. 그러나 현실의 노동현장에서는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등 권리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노동자 스스로가 자신의 노동인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침해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그럼에도 현재 노동인권교육은 체계적인 법적 근거 없이 일부 기관이나 단체의 자발적 노력에 의존하고 있어, 지역별·계층별로 교육 기회가 불균등하고 체계적인 생애주기별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학교에서의 노동인권교육은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청소년(만 15~24세) 노동인권 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동 중 부당한 일을 경험했을 때 참고 일하거나 그만두는 등 소극적으로 반응한 청소년(만 15~24세)이 약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생애주기별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학교와 사회 전반에서 노동인권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노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실현되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3인)

2025-12-03 발의

청소년, 이주 노동자,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 등 노동인권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임금체불, 산업재해, 부당대우 등 노동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으나, 현행 노동인권교육은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지역·기관별로 편차가 크고 체계적이지 못한 실정임

또한 학교에서의 노동인권교육은 교육과정·교재·전문인력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이 노동기본권과 노동안전권을 충분히 이해할 기회를 갖기 어렵고, 사회·사업장에서도 교육 접근성이 낮아 노동인권 침해 예방 기능이 제한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의 기본체계를 확립하고, 학교·사회·사업장 전반에 걸친 종합적·체계적 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특히 취약계층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하여 노동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의원 등 10인)

2025-12-03 발의

현행법은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2회 이상 유죄 확정 기준으로 인하여 실제 명단 공개의 대상이 되는 체불사업주의 수가 적어 그 결과 제도의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임금체불 사건은 근로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사건이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 구조임. 예외적으로, 현행법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추가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에 한해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하지만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라면 공개 기간 중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체불을 한 번이라도 추가하는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 체불 기준을 1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경우로 확대하고, 명단 공개된 사업주가 한 번이라도 임금체불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명단 공개 기간 중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체불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43조의2제1항, 제109조제2항)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2025-12-03 발의

2023년 말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실태현황」에 따르면, 국내 사업체 2,124,670개소 중 상시 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체는 2,036,437개소(95.8%)에 달함. 그럼에도 현행법은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어, 절대다수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채용과정상의 부당행위에는 법적 규율이 미치지 못하고 있음

아울러 면접 과정에서 혼인 여부, 가족관계, 재산상황 등 직무수행과 무관한 사생활 영역에 대한 질문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서류 제출 및 자료 수집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어 실질적인 사생활 보호에 한계가 있음. 또한 구직자들은 채용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불합격 시 합격 여부조차 통보받지 못하거나, 불합격 사유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향후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채용공고에 임금 등 근로조건 명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 채용 결과 통보 등 구직자의 기본적 권리 보호가 필요한 핵심 규정에 대해서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면접 단계에서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명확히 금지하며, 채용시험 각 단계별로 합격 여부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아울러 최종 불합격자가 요청하는 경우 불합격 사유를 안내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하여, 구직자가 자신의 부족한 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공정채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구직자의 권익을 강화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2025-12-04 발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의 채용과정에서 특정인을 채용하거나 배제하기 위해 채용시험의 응시요건이나 채용 결과를 조작하는 부정채용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부정채용을 명확히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죄로만 처벌이 가능한 상황임(공무원의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특히 하급자가 조직 대표 몰래 개인적인 동기로 채용비리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인에 대한 업무방해가 인정되어 처벌이 가능하나, 오히려 조직 대표를 포함한 조직 전체가 공모하여 이루어진 부정채용의 경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아 법원에서 무죄로 판단되는 불합리한 사례도 나오고 있음(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도13217 판결 등)

아울러 부정채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직자들은 그로 인한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구제수단이 부족하며, 부정채용을 통해 합격한 사람에 대한 채용취소의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아 부정채용 발생 후 사후조치에도 어려움이 있음. 게다가 부정채용을 저지른 구인자에 대한 사회적 경고와 재발방지 장치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특정인의 채용 또는 탈락을 목적으로 한 명단작성, 평가기준 조작, 응시자격 요건 변경 등 부정채용행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형사범죄로 규정하여 엄정하게 처벌하며, 부정채용 피해자에게는 채용시 기회를 부여하고 부정채용으로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와 더불어 이 법을 위반한 구인자 및 사업장에 대한 명단공표 제도를 신설하고 법정형의 상한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방해(블랙리스트)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함으로써,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직자의 기회균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복기왕의원 등 24인)

2025-12-01 발의

시외·고속버스는 국민의 장거리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이나 최근 고속철도망 확충과 자가용 이용 증가 등으로 승객수가 지속 감소함에 따라 수익성이 높지 않은 지방의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노선이 폐선되거나 운행횟수가 줄어들어 지역 주민의 이동권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음. 시외·고속버스 사업은 원칙적으로 민간사업자의 면허에 기반한 민영제로 운영되지만 정부가 요금의 상한을 관리하고 다수의 사람을 수송해야 하는 대중교통인 특성상 사업자의 경영여건 개선과 국민의 장거리 이동권 보장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고, 단순히 수익성만을 기준으로 노선의 유지 필요성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분야임. 향후 시외·고속버스 노선의 폐선과 운행횟수 감축 현상이 지속 및 확대될 경우, 수도권·지방지역 간, 지방거점도시·지방지역 간 교류가 단절되어 지방소멸이 점차 가속화되고, 낙후지역 주민의 생활권역도 축소되어 이들의 전반적 삶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그러나, 운행 지역이 전국 단위인 시외·고속버스는 구조적 특성상 운행 지역이 특정 지자체 관할 내로 한정되어 준공영제 등을 통해 운행손실의 대부분을 지자체로부터 보전받는 시내버스보다 지자체의 지원 및 관리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어 안정적인 운영기반이 부재하고, 법정 망계획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도로·철도와 달리 노선별 중요도, 시급성 등을 고려한 교통 네트워크, 이동권 관점에서의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개별 노선 단위의 관리에 그치고 있음

이에, 지역 간 최소한의 광역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을 통한 전국적 교통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비록 수익성은 없으나 운행 또는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한 시외·고속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필수노선”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수노선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재정지원 및 유류비 지원 등을 통해 버스 노선의 운행 안정성과 서비스를 제고하는 등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안 제50조제8항 신설, 제50조의2 신설 등). 아울러, 필수노선을 포함한 시외·고속버스 면허 및 노선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근거도 마련하고자 함 (안 제50조의3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2025-12-02 발의

현행법은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재건축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규정을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완화함에 따라 재개발 정비사업도 재건축의 경우처럼 조합설립 동의율을 하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형평성 제고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35조제2항)**

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4인)

2025-12-02 발의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은 상당수 건설노동자의 사실상 유일한 노후소득 보장 수단임. 그러나 민간 발주 현장에서는 총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공사만 퇴직공제부금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어, 50억 원 이하 현장은 대부분 퇴직공제부금 적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히 한 현장에서 공사를 수행하더라도 소방·배관·전기 등 분리발주 공종별 발주 금액이 50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공종 건설노동자에게는 퇴직공제부금이 적립되지 않아 같은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공종에 따라 노후보장에 차별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총공사금액**”을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계액으로 정의하고, 퇴직공제부금 가입대상을 개별 공종별 금액이 아닌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분리발주에 따른 건설노동자 간 차별을 해소하고, 퇴직공제부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건설노동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안 제2조제16호 및 87조제1항)

국토교통위원회

건설안전특별법안(윤종오의원 등 14인)

2025-12-03 발의

최근 5년간 공식적으로 집계된 건설현장 사망자 수가 1,200명을 넘고 부상자는 3만 명에 이르는 등, 건설산업이 여전히 가장 위험한 산업 중 하나로 남아 있음. 이는 드러난 숫자만을 집계한 것으로,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되며, 현행 제도로는 건설현장의 중대재해를 충분히 예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그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여러 법제의 제·개정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의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특히 다수의 주체가 복합적으로 얽혀 사고가 발생하는 건설산업의 특수성이 기존 법률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이에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건설현장 노동자 등 건설에 참여하는 각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별도의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 단계에서부터 적정 공사비와 적정 공기 산정을 의무화하여 무리한 공기 단축과 이른바 ‘속도전’이 안전을 잠식하지 못하도록 하고, 발주자가 설계자·시공자·감리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사전에 확인하며, 안전자문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등 발주자의 안전 책임을 강화함. 아울러 시공자와 하수급자에게도 공정별·단계별 안전의무를 명확히 부과하는 한편, 계약 이후 드러난 현장 여건으로 인해 공기가 불가피하게 늘어날 경우 공사비 조정을 협의할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안전을 이유로 한 공기·공사비 조정이 정당하게 이뤄질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명예건설현장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여 건설현장 노동자와 안전 전문가가 현장에서 능동적으로 안전을 점검·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준수제도 평가 결과 등에 따른 포상·지원 및 공공발주 공사 입찰 시 가산점 부여 등을 통해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함. 이를 통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중대재해를 구조적으로 줄여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2025-12-04 발의

현행법은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고시에 따른 실질적인 인증 제도의 부재로 인해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 간의 연동성 및 호환성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세대단말기(월패드)나 공동현관기 등 주요 기기가 교체·유지보수 시 상호 연동되지 않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는 입주민들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 및 심각한 거주 불편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현행 고시가 사실상 권고 수준에 머물러 실효적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주택에 설치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의 연동성 및 호환성 확보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인증 및 적합성 평가 제도를 신설하고, 사업주체가 인증 또는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사용검사 시 인증 또는 적합성 평가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입주민의 거주 불편을 해소하고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주택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안 제35조의 2 신설 등)

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0인)

2025-12-04 발의

2024년 말 기준, 임금 체불액은 역대 최고치인 2조448억원, 피해자는 28만3천명에 이르며, 이 중 건설업의 임금 체불액은 전체의 23.4%를 넘는 약 4,780억원 규모임. 건설업의 임금 등 체불은 발주처가 대금을 지급해도 수급인·하수급인 등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기업 규모를 가리지 않고 확산되는 추세이며, 일을 하고도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건설 근로자들의 생존 위협 뿐만 아니라 가정 경제 파탄 등 추가적인 사회문제로 확산될 수 있음

현행법은 공공부문 건설공사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체불 등 문제가 발생한 건설 공사의 경우 건설 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 공사를 가리지 않고 임금 등 건설대금의 체불, 지연 지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민간부문 건설공사에 대하여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및 직접 지급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부문 건설공사에만 적용되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를 민간부문 공사까지 확대 적용하고, 발주자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최종 수급자에게 임금 등 건설공사 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함**으로써 건설공사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설 현장의 임금 등 건설대금 체불, 지연 지급을 방지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회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0인)

2025-12-05 발의

국내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 규모는 약 200조원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최근 공사비 상승, 금융경색 등으로 인해 주택사업 등 부동산개발사업의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 초기 인·허가 지연으로 인해 사업기간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되어 사업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특히, 부동산개발사업은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관여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의견 대립이 첨예한 경우가 많고, 동일한 법령임에도 지방자치단체별로 해석 차이가 있어 인·허가 행정절차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 장기화에 따른 정부의 주택공급계획 차질 등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주요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를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운영 과정에서 적극적인 행정수행이 위촉되지 않도록 면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허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신설 등)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12/8(월) 14:00	- 고유법 심사
	전체회의	12/8(수) 16:00	- 고유법 심사
교육위	법안소위	12/8(월) 14:00	- 법안 심사
	전체회의	12/9(화) 10:00	- 법안 의결, 현안 질의
과방위	전체회의	12/9(화) 09:30	-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김종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 AI 제정법 관련 입법공청회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	12/9(화) 10:00	- 지방세관계법 심사
	법안심사2소위	12/11(목) 14:00	- 생명안전기본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 재해영향평가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
국토위	국토법안소위	12/9(화) 10:00	- 법안 심사
	전체소위	12/10(수) 10:00	- 법안 의결, 법안 상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12/8(월) 14:00	디지털자산 제도화 토론회: 시장 '혁신'과 '안정'을 위한 디지털자산 제도구축 방향	박상혁·김재섭 의원실	의원회관 1간담회의실
	12/8(월) 14:00	탄소중립과 해양 강국 실현을 위한 SMR: 해양 원자력 세미나	최형두·서일준 의원실 등	의원회관 3간담회의실
	12/9(화) 10:00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공공재생 에너지법 토론회	박해철·김주영 의원실 등	의원회관 4간담회의실
	12/9(화) 10:00	대한민국 기업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급변하는 국내·외 경영환경 대응전략	신동욱·최은석 의원실 등	의원회관 5간담회의실
	12/10(수) 10:00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방안 토론회	이용우·김태선 의원실 등	의원회관 4간담회의실
	12/10(수) 10:00	한국 철강산업 고도화를 위한 정책 과제	권향엽·권영진 의원실 등	여의도 글래드호텔 블룸B
	12/10(수) 14:00	AI·로봇이 여는 건설산업의 미래: 기술혁신과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	민홍철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12/10(수) 14:00	디지털자산과 금융소비자보호 방안	민병덕 의원실 등	의원회관 7간담회의실
	12/11(목) 14:00	2025년 금융산학대상 세미나: 『K-컬처 300조 시대, K-콘텐츠에서 글로벌콘텐츠로 성장』	임오경·강준현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12/12(금) 10:00	소상공인 지속·성장 발전을 위한 정책포럼	오세희·서영교 의원실 등	의원회관 9간담회의실
자료집 등	12/8(월)	「최신외국정책정보」 제23호(2025-23호) 발간	국회도서관	
	12/9(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87호(2025-24호) 발간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09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12/1(월)	「Data+ 2025-23호」 통권 제23호	국회도서관	
	12/2(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86호		
	12/3(수)	「금주의 서평」 제756호(2025-47호)		
	12/3(수)	「Data&Law」 제38호(2025-13호)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12/1(월)	바이오/헬스케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약가제도 개선방안(안) 보고
12/1(월)	국방획득/방위산업	국방·방산분야 소위원회[국가계약분쟁조정위 산하] 신설에 따라 방위사업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적절한 대응방안 선택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12/2(화)	지적재산권	‘생성형 AI의 학습 데이터 사용 및 출력물에 관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최근 독일 판결 (GEMA v. OpenAI)
12/4(목)	방송통신(TMT)	EU 집행위원회, ‘디지털 간소화 방안’ 발표
12/5(금)	노동	월간 노동 뉴스레터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